(제150회-운영위제1차부록)

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

1. 의안제출

○ 제출일자 : 2012. 7. 2.

○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회부일자 : 2012. 7. 4.

2. 결산개요

○ 관련법규

•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

•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
•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○ 결산의 의의

•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결과, 지방의회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임

•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(Feed Back)역할

•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 발생

○ 결산의 절차

• 세입·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

•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

3. 검토의견

ㅇ 2011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5억6천8백99만7천원으로,
집행액은 15억4천9백82만6천760원이며, 불용액은 1천9백1십7만240원입니다.

ㅇ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연수 국내여비 350여만원,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130여만원, 의정활동 운영수당250여만원,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300여만원, 인력운영비 500여만원으로

ㅇ 계획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는, 추경을 통해 삭감 또는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